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안내

□ 계획수립 및 확인 의뢰대상, 의뢰시기 등

| 구 분 |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 점검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 |
|-----------------|--|--|---|
| 관련근거 (법,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
| 계획수립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 | 작성자 |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수급자)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는 품질목표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 정보 등 26개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확보 등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질시험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등 7개항목 |
| 이행확인 점검 | 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매년 이행확인 점검 · 점검계획 수립(매년 1~2월) 후 3월부터 11월까지 이행확인 점검 | |
| | 확인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수립된 품질관리계획대로 이행여부 확인 점검 · 점검표는 업무지침 준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450호 [별지 제2호 서식]) · 점검항목(26개항목) : 참고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수립된 품질시험계획대로 이행여부 확인 점검 · 점검표는 업무지침 준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450호 [별지 제2호 서식]) · 점검항목(7개항목) : 참고1 |
| | 확인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가 국공립시험기관(건설본부 품질시험실)에게 의뢰하는 경우 : 경기도 건설본부장 · 발주자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의뢰 | 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가 국공립시험기관(건설본부 품질시험실)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만 해당 - 계속공사 : 매년 1월말까지 의뢰 - 신규공사 : 착공 후 1월 이내 의뢰(필요시 별도 시행) | |

※ 민자사업이나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부서(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의뢰

참고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항목

□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 점검 항목(26개항목)

| | | |
|-------------------------|-------------------------|---------------------------|
| 1. 건설공사의 정보 | 10. 교육훈련관리 |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 장비 관리 |
|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 목표 관리절차 | 11. 의사소통관리 |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관리 |
| 3. 책임 및 권한 | 12. 기자재 구매관리 | 21. 부적합 공사의 관리 |
| 4. 문서관리 | 13. 지급자재 관리 | 22. 데이터의 분석관리 |
| 5. 기록관리 | 14. 하도급 관리 |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
| 6. 자원관리 | 15. 공사 관리 | 24. 자체 품질점검 관리 |
| 7. 설계관리 | 16. 중점 품질관리 |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관리 |
| 8. 건설공사 수행준비 | 17. 식별 및 추적 관리 | 26.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 |
| 9. 계약변경관리 |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 관리 | |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항목(7개항목)

-
1.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2.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절성 여부
 -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3. 품질관리 관련 법령·규정, 품질시험 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4. 품질시험 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5. 품질시험 또는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6.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 여부
 -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의 식별표시
 - 검사장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 관리
 7. 부적합 자재 및 부적합 공정처리 등 적정 여부
-

□ 의뢰시 유의사항

【관 공사】

- 경기도(투자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 해당기관의 장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우리 건설본부에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민간 공사】

○ 경기도에서 인가허가한 민간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거나 인·허가한 행정기관의 장(해당기관의 장)**이 건설본부장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 시·군에서 인가허가한 민간 건설공사

- **시·군 인·허가권자는** 관내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건설현장 점검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시·군에서는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에 확인의뢰 가능

-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점검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음**

-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수수료 (경기도고시 제2022-9호, 2022. 1. 17.)
 - 가.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1,358,970원 [기술사 2인, 고급기술자 1인, 차량운행]
 - 나.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288,980원 [고급기술자 1인, 차량운행]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